

# 구 제 청 구 서

	성명 :	피수	-용자와의 관계 :	
구제	주민등록번호 :			
청구자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성명(또는 기관명) :			
	(기관의 경우 대표자 :		)	
수용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피수 <del>용</del> 자	성명 :			
1101	주민등록번호 :			
청구 요지				
및 수용이 위법한				
사유				
(필요하면				
별지사 <del>용</del> )				
۸0 TL 4				
수용 장소				
	□ 있음(			,
첨부서류				,
	□ 없음			
20				
	<i>.</i> 구제청구자	• •	· ① (또는 서명)	
	1/11/8/1/17		(보는 기정)	nj oj -j z
				oo법원 귀중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 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 주,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 수용자, 피수용자에게 심문 날짜를 알려주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것입니다.

법원은 심리한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 ※ 구제청구의 관할법원 · 방식

구제청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 위 **또는 지워**에 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는 ①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②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③피수용자의 성명 ④청구의 요지 ⑤수용이 위법한 사유 ⑥수 용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수용자의 의무

답변서 제출 의무



수용자는 구제청구서부본을 받게 되면 심문기일 전까지 ①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밖에 피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피수용자를 수용한 일시 및 장소 ③수용의 사유 ④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예상되는 수용의 종료시기 ⑤그 밖에 수용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용자가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심문기일 출석 의무

수용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 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자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킬 의무

법원이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소환한 경우에는 수용자는 피수용자를 법원으로 호송하여 당일의 심문이 종료될 때까지 법원 청사 내에서 피수용자를 감호하여야 합니다. 피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수용자가 피수용자를 법정에 출두시키지 않은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법원에 밝혀야합니다.

# ※ 임시해제와 신병보호결정

#### 임시해제

구제청구자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피수용자를 계속 수용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해제된 후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임시해제결정 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임시해제결정을 취소하고 피수용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

### 신병보호



법원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는 위와 같은 법원의 신병보호조치에 대하여 그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재판비용의 부담

구제청구자는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참고인의 출석 비용,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위한 비용, 피수용자를 임시 수용시설에 이송하여 수용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구제청구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비용을 납부할 자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 재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인신보호제도 통합콜센터 ☎ 1661-9797

전화 한 통으로 쉽고 자세하게 인신보호제도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를 하였을 경우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신청방법, 준비서류 관할법원 등 절차 안내를 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법원 담당자에게 연결해 드립니다.